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95
------------	-------

제출년월일 : 2025.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및 용어 정비
- 나. 보험 목적물 대상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다. 보험료 지원 대상별 한도 금액(기준)명시 추가(안 제6조제3항)
- 라. 제6조제3항 추가에 따른 명시 불필요로 인한 삭제(안 제7조)
- 마.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안 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7. 10.~7. 30.(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풍수해보험료”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 자연재해 중”을 “따른”으로, “(豪雨)·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을 “(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한다.

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 중 “풍수해로”를 “풍수해·지진재해로”로, “풍수해보험료”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건축물”을 “사업장의 건축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풍수해보험에**”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로, “**「풍수해보험법」 제7조**”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을 “**(보험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9조의제2항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풍수해로**”를 “**풍수해·지진재해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u> <u>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풍수해</u> <u>보험법</u>」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 포구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 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보상하기 위한 <u>풍수해보험</u> <u>료</u>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 법」 제2조제3호에 <u>따른 자연</u> <u>재해 중 태풍 · 홍수 · 호우(豪</u> <u>雨) · 대설 · 지진(지진해일을</u> <u>포함한다)</u>으로 발생하는 재해 를 말한다. <u><신 설></u> 2. “<u>풍수해보험</u>”이란 「<u>풍수해</u>	<u>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u> <u>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풍수해·</u> <u>지진재해보험법</u>」----- ----- ----- ----- ----- <u>풍수해·지진</u> <u>재해보험료</u> ----- ----- -----. 제2조(정의) ----- -----. 1. ----- -----<u>따른</u>--- --(<u>豪雨</u>) · <u>강풍</u> · <u>풍랑</u> · <u>해일</u> (<u>海溢</u>) · <u>대설</u>----- -----. 2. “<u>지진재해</u>”란 「<u>자연재해대</u> <u>책법</u>」 제2조제2호에 <u>따른 자</u> <u>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u> <u>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u> 3.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이란

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
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
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생략)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서울
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
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
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
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
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
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생략)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건
축물과 시설물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
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

----- 풍수해·지진재
해로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

-----.

제4조(보험목적물) -----

-----.

1. (현행과 같음)

2. -----
----- 사
업장의 건축물-----

제6조(보험료 지원) ①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
----- 「풍수해·지진
재해보험법」 제7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한도) ①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서를 구청장(동주민센터 포함)이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생

② -----
제3조-----
-----.

③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삭 제>

제8조(보험가입)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제9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현

략)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u>풍수해보험</u>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u>풍수해보험 가입 홍보</u>)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u>풍수해보험</u>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u>풍수해</u>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행과 같음) ②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 제11조(<u>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u>)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u>풍수해·지진재해</u> ----- ----- -----.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급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지급실적(최근5년)

보험금 지급년도	보상목적물 주소(주택)	건수	사고원인	지급보험금	보험종류
2020	서교동	1	호우(침수)	2,000천원	풍수해보험1
2022	연남동	1	호우(침수)	9,778천원	풍수해보험1
2025	망원동	1	강풍	175천원	풍수해보험3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물관리과 류희성
연 락 처	02-3153-9814